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급 또는 5급 인력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5. 31. ~ 6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정원”을 “정원 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·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또는 5급 1명) 및 그 밖의 정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 략)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<u>정원</u> 중 15명(5급 6명, 6급 8명, 7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	제8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정원</u> <u>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·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또는 5급 1명) 및 그 밖의 정원</u> -----.